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383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9. 9.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4. 4. 9. C에게 3,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9. 4. 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2018. 10.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2. 19.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28192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4. 1. "C는 원고에게 5,466,964원 및 그 중 2,668,463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4.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 2. 10. 사망하였는데, 망 E은 망 F과 사이에 피고와 C를 포함한 8명의 자녀들이 있다.

마. 망 F은 2018. 7. 2. 사망하였다. 피고와 C를 비롯한 망 F의 상속인들은 2019.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5.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망 F의 상속인으로 C와 피고를 포함한 총 8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 위 법정상속인들은 2019.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인 1/8 부분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의 형제이자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인 1/8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